

09 재학생 보험 및 법률상담 서비스

9.1. 재학생 보험

재학생이 교내에서 교내 시설물에 의해 상해를 입거나 교육활동 중 상해를 입은 경우, 상해치료비가 실비로 지원됩니다.

※ 보장 내용은 보험 재가입시 변동될 수 있음

9.1.1 가입대상(피보험자)

이화여자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, 외국인 교환학생

9.1.2. 보상적용

학교 교내에서 업무의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 및 연구활동 중 사고, 학교에서 주관, 허가하는 공식적인 학교 교육활동 관련으로 교원이 인솔하는 교외활동(수업, 세미나, 답사 등)에서 발생한 사고

9.1.3. 보상종류 및 한도

내용	보상한도액(원)
교내·외 치료비*	상해치료비 1백만
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**	상해의료비 사망/후유장해 20억 2억

* 교내·외 치료비 : 교육기관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교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교육기관의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보상. 사고 발생일 기준 180일간 치료받은 금액 (1백만원 한도 내에서) 보상

**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: 연구실 안전규정 관련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별도 보험으로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입은 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. 「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」에 따름 (대상자: 교내 안전팀 등록 연구실 내 실험 중 안전사고 발생자)

9.1.4. 보험금 청구 방법

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단과대학(원) 행정실로 제출

- 총학생회, 중앙동아리 교내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학생지원팀(학생문화관 202호)으로 제출
그 외 본교 학생단체의 교내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해당 단체/연구 활동 주관부서로 제출
-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기숙사행정실로 제출

※ 교내 안전팀 등록 연구실 내 연구활동 중 발생한 사고 관련 - 관리처 안전팀으로 문의

9.1.5. 제출서류(일반 상해보험사고)

-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사고 경위서 (피해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. 사고 경위서의 경우 행정실 확인 필요)

- ※ 유레카 서식모음 게시판에서 "재학생 보험 -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사고 경위서" 서식 다운로드
- 재학증명서(외국인 교환학생은 'Certificate of Enrollment')
- 병·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(카드매출전표 불가)
- 진료비세부내역서(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)
- 진단서(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, 진료확인서,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)
- 입원 시 입·퇴원 확인서, 수술시 수술확인서
- 본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

9.2. 법률상담 서비스

이화법조인회 (이화여대 출신 법조인들의 모임으로 약 2,000여 명의 판사, 검사, 변호사로 구성) 동창들 중 50여 명의 변호사들이 이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대외협력처 홈페이지 (<http://giving.ewha.ac.kr>) ▶ 이화동창 ▶ 동창 프로그램 ▶ 이화법조인회 무료법률상담

9.2.1. 온라인 법률상담

1:1 답변으로 상담해드리며, 모든 온라인 상담은 익명 처리됩니다. 단, 본교 졸업생, 재학생, 교직원에게는 상담내용이 공개되므로, 본인 및 관련인의 실명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여 작성해 주십시오.

9.2.2. 오프라인 법률상담

본교 출신 전문 변호사들과 대면(전화)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대외협력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ewha21@ewha.ac.kr로 보내주시면,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.

※ 메일 제목은 [법률 상담 신청]으로 하여 위 이메일 주소로 상담내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.

- 1) 신청 기한: 매주 월~금요일 정오까지 신청 시 차주 상담 진행
- 2) 상담 일시: 담당 변호사와 개별 연락하여 조율
- 3) 상담 장소: 담당 변호사 사무실

※ 문의: 대외협력처 02-3277-2926 (통화 가능 시간: 월~금 오전 9시~오후 5시, 오후 12시~1시 제외)